

# 산재보험재심사재결사례

## 관계법규의 올바른 적용을 위한 참고서

○○건설 방수공이 작업 중 갑자기 말을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상병명 “고혈압 및 뇌졸중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87 ~ 250 호 87. 9.21. 취소)

### 재 결 서

재 심 청 구 인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성명: 정 ○ ○

소속:

원처분을 받은자 주소: 상 동

성명: 강 ○ ○

소속: ○○건설(주)

원 처 분 청: 노동부 서울동부지방사무소장

### 주 문

노동부 서울동부사무소장이 1987. 8.17. 재심○○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이 유

재심사 청구인 정○○(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재심사 청구취지는 노동부 서울동부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강○○(이하 “피재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한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피재자는 ○○건설 주식회사 소속 방수공으로서 1987. 5.27. 09:20경 무역센터 건설공사장에서 지하 4층 물탱크 내부의 치핑(건출) 작업을 동료 근로자 김○○과 같이 하던중 급작히 말을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병원에 후송한바 상병명 “고혈압 및 뇌졸중(뇌출혈)”로 진단되어 그 병원에서 입원 가료중에 원처분청에

보험법 제 9조 3에 의한 요양승인을 청구하였던 바, 원처분청은 재해경위, 작업내용, 피재자의 처의 진술,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 등을 종합 검토한 바 작업내용이 방수액만 칠하는 단순업무이며, 야근등 연장근로를 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평소때 매우 건강한 편이고 업무량도 발병 전에 비하여 현저하게 과격하거나 양적으로 많아 강도의 정신적 긴장 또는 신체적 과로를 요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어 과격한 업무로 심신의 흥분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할 수 없고 더욱이 피재자는 이러한 작업에 종사한 20년의 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일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외상이나 외부의 충격을 받아 발병한 것이 아니며, 재해발생, 원인이 불분명하므로 노동부 예규 제 92호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이하 “재해인정기준”이라 한다) 제 9조에 의거 업무의 재해로 판단하여 요양신청을 불승인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 청구하였으나산재심사관은 원처분청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피재자는 매일 12시간(07:00 ~ 19:00) 근로를 하여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고, 작업장에서 자기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 외에 개인적으로 음주나 시비를 하여 발생한 재해가 아니므로 업무 수행성이 분명하며 ○○병원에서 혈압측정 결과 210/110 mmHg써 고혈압에 의한 발병이 의학적으로나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업무상 재해가 확실한데도 원처분청이 요양 불승인처분을 함으로써 재해당일부터 입원조치가 안되어 3개월간을 응급실에서 지내고 있어 상병이 악화되어 죽음직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 건의 쟁점은 원처분청이 청구인의 재해를 업무외로 판단하여 요양급여를 불승인 처분한 것이 타당하느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위원회는 이 건의 쟁점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 (1987. 8.26. 정○○)
2. 원처분청 의견서 (1987. 7.3. 노동부 서울동부사무소장)
3. 산재심사관 결정서 등본 (1987. 8.17. 오

○○)

4. 요양신청서 사본 (1987. 5. 강○○)
5. 소견서 사본 (1987. 5.28. ○○병원의사 김○○)
6. 자문의 소견서 사본 (자문의 남○○)
7. 확인서 사본 (1987. 6.18. ○○병원 김○○)
8. 재해조사 보고서 사본 (1987. 6. 노동부 서울동부사무소 배○○)
9. 요양불승인 통보 사본 (1987. 7.21. 노동부 서울동부사무소장)
10. 문답서 사본 (1987. 5.27. 강○○, 김○○, 정○○, 윤○○)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피재자의 재해가 업무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건대,

첫째 : 피재자의 재해 발생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원처분청이 조사한 목격자로서 피재자와 같이 작업을 하였던 김○○의 문답서를 살펴보면, 목격자는 피재자와 같이 방수작업을 한 것이 1개월이 되며, 근무시간은 매일 07:00 ~ 19:00로써 12시간 근무제이고, 재해당일인 1987.5.27. 09:20경 건설공사중인 무역센터 호텔 동 지하 4층 물탱크 내부 방수액 도포를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핀치(건출)작업을 하고 있던 중 피재자의 망치 소리가 갑자기 안들려서 보니까 피재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어 팔을 잡으니까 말도 못하고 입술만 조금 움직이는 상태이었고 진술한 것이 확인되어 피재자는 업무수행중에 발병한 것이 명확하며,

둘째 : 피재자를 응급치료한 ○○병원 의사 김○○의 1987. 5.28. 자 소견서를 보면 상병명이 “고혈압 및 뇌졸중(뇌출혈)”으로 본원에 응급내원, 뇌 컴퓨터 단층촬영후 입원 가료중인 자료 향후 합병증 및 후유증이 발병치 않는한 56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추후 재진단을 요함”이고, 같은 의사의 1987. 6.18. 자 확인서를 요약하면 “내원시 상병상태 : 혼수상태, 혈압 210/110, 발병원인 고혈압, 현재 기동 불능상태”로서 피재자는 고혈압이 원인이 되어 뇌졸중(뇌출혈)이 발병된 것이 인정된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재지는 업무 수행 중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뇌출혈)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노동부 예규 제 92호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제 16조 “고혈압등에 따른 뇌졸중” 규정에 따라 고혈압등의 출혈성 소인등의 질환을 가진 피재자가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업무

수행중 뇌졸중을 일으켰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피재자의 질환을 업무의 원인에 발병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재자에게 요양을 불승인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산업 컴퓨터사 기장이 의자에 앉아 근무하는 도중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 (뇌실질 뇌혈종)”의 상방이 발생한 경우**

(87-254 호 87. 9.21.취소)

**재 결 서**

재 심 청 구 인 주소 : 인천직할시 남구 주안동  
 성명 : 이 ○ ○  
 소속 : ○○산업(주)  
 원처분을 받은자 주소 : 상 동  
 성명 : 반 ○ ○  
 소속 : ○○산업(주)  
 원 처 분 청 : 노동부 인천지방사무소장

**주 문**

노동부 인천지방사무소장이 1987. 6. 4. 자 피재자 반○○의 처인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재심사 청구인 이○○(이하 “청구인” 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노동부 인천지방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87. 6. 4. 자 피재자 반○○의 처(이하 “청구인” 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불승인 적용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피재자 반○○(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1987. 4. 3. 일 21:30 경 ○○산업(주) 소속 컴퓨터사 기장으로 근무중 갑자기 쓰러져 원처분청에 1984. 4.10.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자 원처분청에서는 재해조사 결과 피재자는 컴퓨터사

기장으로 사고 발생당일 19:00 에 출근하여 에어 컴퓨터사실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과로한 사실도 없었고 외적인 충격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평소 건강상태도 정상이었다고 진술하였고, 개인 신체검사서표상 79년도부터 86년도까지 8년간 혈압상태는 정상이었으며, 발병당시 주치의의 소견서상 측정치 혈압이 110/70 으로 고혈압 증세로는 볼 수 없고 업무와의 관련성은 임상적으로 연관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자문의 소견 또한 업무와의 연관성은 없다하므로 상병명에 대한 담당주치의의 소견서 및 일반건강진단 개인표, 자문의 소견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피재자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제 9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만한 요건을 발견할 수 없어 업무의 재해로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 청구하였으나 산재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다시 불복하면서 상병명 뇌출혈(뇌실질 뇌혈종)에 대한 업무상 판단 오류로 인하여 요양불승인 되었으며 작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업무상 인정기준 제 16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으로 보아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상병명 뇌출혈(뇌실질 뇌혈종)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이 건의 쟁점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1987. 9. 7. 이○○)
2. 원처분청 의견서(1987. 9.10. 노동부 인천지방사무소장)
3. 산재심사관 결정서(1987. 8.18. 오○○)
4. 요양신청서(1987. 4.10. 반○○)
5. 진단서(1987. 7.23. 인천○○병원장)
6. 진단서(1987. 4. 인천○○병원장)
7. 진단서(1987. 7.14. 인천○○병원장)
8. 요양 결정 결의서(1987. 6. 4. 노동부 인천지방사무소장)
9. 소견서(1986.11.28. 인천○○병원장)
10. 소견서(1987. 5. 6. 인천○○병원장)
11. 문답서(1987. 4.29. 반○○)
12. 기 타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 검토하건대, 청구인은 피재자의 상병명 뇌출혈(뇌실질 뇌혈종)에 대한 업무상 판단을 원처분청이 오류로 인하여 요양불승인 되었으며 작업장에서 근무중 발생한 재해사실에 대하여 분명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제 16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면밀히 살펴보건대,

첫째 : 피재자의 작업내용 등을 살펴보면 1987. 4. 3. 동사 발전실에서 콤퓨레사의 작동상태를 감시하는 단순업무를 맡은 자로서 통상 2인 1조가 되어 격주로 주야간(07:00 ~ 19:00, 19:

00 ~ 07:00) 2교대 근무하여 오다가 재해당일은 야간근무로 19:00 경 정상출근하여 의자에 앉아 통상 업무를 수행하던중 21:30경 발병 졸도하였고

둘째 : 피재자의 문답 내용에도 평상시 업무가 과중하거나 과로한 사실이 없었고 고혈압이나 다른 질병도 없었으며, 발병 당시는 의자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다칠만한 원인은 없었고

세째 : 인천 ○병원 주치의 발행 초진소견서(1987. 4. )상 상병명 “뇌출혈”로서 초진 소견으로는 약 6주간의 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환자 상태에 따라 치료 연기될 수 있음이고 또한 같은 병원 진단서상 상병명 “뇌기저 신경질 출혈, 좌”로 전산화 뇌단층 촬영 소견상 상기 병증이 발생하였으며, 출혈의 과거력도 보이지 않았으므로 기존의 고혈압성 출혈로는 생각되지 않음임.

네째 : 인천○○병원 발행(의사 전○○) 진단서(1987. 7.23.)상 상병명 “뇌실질 내혈종”으로서 현재도 우부전 마비, 복서등은 뇌실질 내혈종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됨임.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재자는 1987. 4. 3. 업무수행중 졸도하여 병원으로 후송한 바 있으며 의학적 소견상 출혈성 소인 등의 기존 질환으로 인하여 뇌졸증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동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이탈, 재해 또는 순수한 사적행위로 발행한 근거가 없는한 업무상 질병으로서 노동부 예규 제 92호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제 16조에 적용함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피재자의 재해를 업무의 재해로 요양 불승인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